

의안번호	2217033
의 퇴 인	김태호의원
회 답 일	2026.3.11.
추 계 번호	26B0802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조의5 신설 (주택조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)	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 및 조합원 모집,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 등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)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하며, 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에 주택조합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조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조정위원회는 부시장·부지사·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(제2항)	의무규정
2	안 제14조의6 신설 (조정위원회의 조정 등)	조정위원회는 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 및 조합원 모집,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 등에 따른 분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사항을 심사·조정함 1. 분담금 등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각종 비용의 증액 2.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선정 3. 조합원의 탈퇴에 따른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반환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
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규정
1	안 제14조의5 신설 (주택조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4조의6 신설 (조정위원회의 조정 등)	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와 시·군·구에 주택조합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, 조정위원회는 분담금 등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각종 비용의 증액 등 분쟁 사항을 심사·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위원회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쟁조정 심사와 조정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인건비, 운영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 -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주택조합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는 재량사항이므로, 전국적으로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 불확정적이며, 분쟁 사항의 심사·조정 업무 물량에 따라 위원회 운영 규모·회의 개최 횟수 및 지원인력 수 등이 달라질 수 있어 현시점에서 주택조합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국토교통부 내 분쟁조정 사무 관련 위원회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 현황

위원회명	주요 업무	위원수 (명)	연간 회의건수 (2025년, 회)	예산 (백만원)
건설분쟁조정위원회	· 설계·시공·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 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조 정 등	14	6회	-
자동차손해배상보장 위원회	· 공제조합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간 발생하는 분 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·의결 등	29	27	-
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	· 공동주택관리 분쟁 심의·조정	15	9	702
하자심사·분쟁조정 위원회	·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 관과 입주자대표회의등·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등	60	149	2,729

자료: 국토교통부 소관 위원회 현황, 2025년 4분기.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